

시간강사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7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 시간강사의 자격 및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‘시간강사’라 함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 본 대학교 학생의 교육을 맡아 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자격) 본 대학교 시간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. 다만, 박사학위 미소지자로 각 전공분야의 권위자이거나 소속대학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4조(위촉) ① 시간강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학과(부)의 학과(부)장은 매학기 개강 2개월 전에 이력서 및 관련 서류를 소속 대학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무처는 제5조에 의한 자격여부를 서류심사 또는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심의한 후 총장에게 시간강사위촉을 요청한다.

③ 제5조에 의하여 시간강사의 적격자를 추천하지 못하였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7조에 의한 강의시수를 초과하는 경우 교무처는 공개채용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총장에게 강사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위촉의 제한) 시간강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(재위촉 포함)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대학의 조교로 재직중인 자
2. 강의에 태만하거나 교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
3. 수업만족도조사 결과가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자
4. 인사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
5. 교육비자 미취득자
6.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학사업무에 비협조적인 자(성적정정의 경우 다음 학기에 한하여 위촉을 제한함)
7.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
8. 재산상의 권리제한을 받고 있는 자
9. 해당분야 전임교원의 강의 책임시수가 미달되는 상황에서 시간강사가 교과목을 담당하고자 할 때

3-2-14~2 제3편 행 정

10.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타 총장이 시간강사로서 부적격이라고 결정한 자

제6조(위촉기간)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1개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, 재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(강의담당시수) ①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이라 함은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② 시간강사의 담당시수는 학부 및 각 대학원, 부속기관 강의를 포함하여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하되, 학부에서의 강의시간은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8조(강사료 지급)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강사료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(해촉) 시간강사는 강의하는 학기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시간강사가 그 담당과목을 계속 강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학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9조의2(시간강사의 처우) 시간강사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대기실 및 지원시설을 운영한다.(신설 2018.08.23.)

제10조(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시간강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